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

제156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
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10. 27.(화)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 출 일: 2026. 10. 16.

나. 제 출 자: 창원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. 10. 20. (의안번호 제101호)

라. 상정 및 의결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6.10.27.)

2. 제안설명 요지 (이유정 자치행정국장)

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되는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40조가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(안 제1조, 제5조, 제10조, 제12조)

3. 참고 사항

○ 관계 법령 등 (안건책자 참조)

4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정이)

□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40조가 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2로 이관되어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40조	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2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40조제5항	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2제7항

【 법령 조문대비표 】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40조	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2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	제17조의2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
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	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	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	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	2.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	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	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이 위촉한다.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40조	「지방자치법」제17조의2
(해당 규정 없음)	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(해당 규정 없음)	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(해당 규정 없음)	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(해당 규정 없음)	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(해당 규정 없음)	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	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(해당 규정 없음)

□ 종합 의견

○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「지방자치법」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, 관련 규정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5. **질의 · 답변 요지**: 기재 생략

6. **토론 요지**: 기재 생략

7. 심사 결과: **원안 가결**

8. **소수의견 요지**: 없음

9. **기타 필요한 사항**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